

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[]주택임차 []상가임차

(앞쪽)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즉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임차하여 사용하고 하고자 하는 자 (신청인) | 성명(상호) |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|
| | 주소(사업장) | 전화번호 |
| 건물 소유자 (임대인) | 성명(상호) |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|
| | 주소(사업장) | 전화번호 |

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(건물의 종류·명칭 및 동·열·층·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)

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에 따라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(신청인)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건물 소유자(임대인)

(서명 또는 인)

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에 따라 위 건물 소유자(임대인)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| | | |
|------|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건물소유자(임대인)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)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|-----------|

유의사항

-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.
-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건물소유자(임대인)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
한부터 30일(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)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.

